

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 **94**

제출년월일 : 1999. 4.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개정사유

- 농촌지역의 학생수가 급속히 줄어 2-3개 학년이 한 학급으로 복식수업을 받는 소규모학교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

주요골자

- 분교장폐지(2분교장)

명 칭	위 치	폐지년월일	폐지사유
생극초등학교 관성분교장	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13	'99. 5. 1.	농촌교육발전을 위한 소규모학교 통폐합
생극초등학교 오생분교장	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생리 570	'99. 5. 1.	

개정근거

-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
- 농촌교육발전을 위한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

조 례 안 : 덧붙임

참고사항 : 덧붙임

- 신구조문대조표
- 관계법령발췌서
- 소규모학교 통·폐합 추진지침

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“【별표 4】”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